

자동차보험금지급청구서



■ 사고개요

사고차량번호				차주성명			☎
사고 일시	년	월	일	시	분	사고장소	
차량의 용도	운행경위			면허종별		종	
운전자명	주민번호			면허번호			
연락처	E-mail			@		갱신기간	

■ 사고내용

피해상황	피해자	외 명		피해물			
	치료병원			수리처(차명)	()		
사고경위							
사고현장 약도							예시
							내차 상대차 이륜차 사람
							*경찰서신고(유,무) ()경찰서

■ 보험금청구 및 위임장

1. 보험금청구

위와 같이 자동차사고에 대하여 사고경위를 작성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겠으며, 이미 수령한 보험금은 즉시 반환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보험약관 사고부담금 규정에 따라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 중 사고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완료 여부와 상관 없이 사고부담금을 납입하겠습니다.

2. 위임장

가. 상기사고로 인한 피해자 _____ 에 대하여 합의 및 손해배상금 지급 등의 권한일체를 귀사에 위임합니다.

나. 위 자동차 사고로 인한 (1) 각종 치료비, (2) 대물원상복구비, (3) 자차수리비의 청구권과 영수권을 _____ 에게 위임합니다.

청구자 및 위임자	주 소 :	(인) 피보험자와의 관계 :	담당자확인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청구 · 위임 · 등록일자 : 20 년 월 일		

※ 보험사기(고의사고, 허위도난, 사고내용조작, 운전지/차량바꿔치기, 피해과장, 사고 후 보험가입 등)는 범죄이며, 형법 제347조(사기죄)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